

‘상징천황제’의 구성원리와 일본적 기억공동체의 특징*

손정권**
jkson@cup.ac.kr

<目次>

- | | |
|--------------------------|-----------------------------|
| 1. 들어가기 | 4. 제도적 장치로서의 ‘상징천황제’와 기억공동체 |
| 2. ‘상징천황제’와 ‘집단적 기억’의 변용 | 5. 나가기 |
| 3. 헌법체제 속의 ‘상징천황제’ | |

주題語: 천황(Tenno/Emperor), 상징(symbol), 천황제(Tenno system), 상징천황제(Emperor-as-a-system), 일본국 헌법(Constitution of Japan), 황실전법(Imperial House Act), 기억의 전승(Tradition of memory), 사회적 기억(Social memory), 집단적기억(Collective memory), 문화적기억(Cultural memory), 기억의 공동체(The community of memory), 역사인식(Recognition of history), 집단적 자위권(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헌법 개정(Constitutional amendment), 아베정권(Abe Administration), 제도적 장치(Institutional equipment)

1. 들어가기

2013년 5월 3일, 소위 헌법기념일에 맞추어 일본의 각 언론사는 일본국민이 헌법 개정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사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아사히(朝日)신문사의 우편조사로부터 시작된 총 7개의 미디어¹⁾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헌법 개정에 관한 일본국민의 의견이 찬성 쪽에 가깝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²⁾고 할 수 있다. 이는 일본의 우익세력이 현행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위권’에 대한 확대해석을 바탕으로

* 이 논문(저서)은 2012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2-S1A5B5A-07037671)

** 부산가톨릭대학교 인성교양부 초빙교수

1) 헌법개정과 관련하여 여론조사에 참여한 7개의 미디어사는 朝日, 毎日 読売, 産経(FNN), 日経(TV東京), NHK, 共同通信이다.

2) 「憲法改正に関する世論調査の結果(헌법개정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
<http://www2.ttcn.ne.jp/honkawa/j013.html>에서 참조

‘집단적자위권’의 발동을 주장한 것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우익정권을 표방하고 있는 현 아베(安倍)정권이 현행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위권’에 대한 해석의 확대를 넘어 헌법 개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여론몰이로 내닫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집단적 자위권’발동에 대한 일본국민의 의식이 ‘반대’에서 ‘찬성’의 의견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앞선 줄고)속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일본의 변화, 특히 역사 인식을 둘러싼 일본의 변화는 집단적 기억이란 측면에서 이해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다. 특히 전후 70년을 눈앞에 둔 일본의 역사인식에 대한 변화양상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에서 알브박스가 규정하고 있는 집단적 기억의 유효기간 ‘70년’이란 시한은 의미 깊은 수치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소위 자유주의사관으로 불리는 역사인식이 일본사회 속에서 급격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작금의 실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일이며, 이 역시 ‘집단적 기억’의 맥락에서 그 역사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일본의 우경화에 대해서 이미 여러 학자가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고, 이러한 예측은 우리가 일본의 역사인식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가야 하는 것인가를 간접적으로 제시해 주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권혁태가 「일본의 ‘우경화’와 동아시아의 평화」속에서 일본 우경화의 끝을 ‘헌법 개정’으로 예견한 것은⁴⁾ 일본의 대외적 외교전략이 역사인식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지적한 일이고, 우수근이 『한중일 외교 삼국지』에서 일본에 대한 우리의 외교 전략을 장기적인 대처법으로 접근해야 할 것⁵⁾임을 강조한 것은 신민족주의의 반발에 대한 경계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집단적 자위권’에서 ‘헌법 개정’까지 현대 일본사회의 극단적 우경화의 근저에 내재되어있는 역사인식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필자는 현대 일본의 천황제가 담보하고 있는 ‘집단적 기억’과 ‘기억의 공동체’의 상징성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⁶⁾. 본 논문은 이를 바탕으로 특히 ‘상징천황제’의 구성원리가 결과적으로 일본의 집단적 기억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로 전환되었다는 전제하에 현대일본사회의 변화와 연동하여 검토해 가는 것으로 하겠다. 이를 통해 ‘집단적 기억’ 혹은 ‘문화적 기억’이 어떻게 ‘기억공동체’를 구성해가는 것에 대해 살펴볼 것이며, 결과적으로 상징천황제를 통해 구성되는 현대일본사회의 ‘기억공동체’가 지니고 있는 역사적 의미에 대해 검토해 가고자 한다.

3) 손정권(2010)「근대천황제 인식논리와 역사인식의 한계」『일본근대학연구』제30집

손정권(2012)「현대일본의 상징천황제와 기억의 전승」『일본근대학연구』제37집

4) 권혁태(2005)「일본의 ‘우경화’와 동아시아의 평화」『녹색평론』제82호, pp.118-133

5) 우수근(2008)『한중일 외교 삼국지』삼성경제연구소

6) 주3))의 논문

2. ‘상징천황제’와 ‘집단적 기억’의 변용

‘집단적 기억’이란 무엇인가? ‘집단적 기억’이란 프랑스 사회학자 모리스 알브박스⁷⁾가 제창한 개념으로 그는 교회의 성립과정을 통해 ‘기억’의 사회성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알브박스가 설명하는 기억이란 과거의 언어화이고, 말에 의한 과거의 의식화를 의미한다. 그는 교회가 예수를 기억해 가는 과정(종교화)을 통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억하는 사회와 과거에 대한 기억이 마치 개인의 기억을 바탕으로 구성되어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해당공동체의 신념에 의해 재구성되어진 ‘집단적 기억’에 의한 것이란 사실을 증명하고자 한다. 알브박스의 설명에 따르면 모든 공동체 혹은 사회에 있어서 ‘집단적 기억’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억’이 해당 집단의 자기인식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에 모든 공동체는 ‘집단적 기억’을 구성해 가고자 하는 것이고, 이 점에서 기억이란 개인이 아니라 ‘사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또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설명이 가능하게 된다. 때문에 ‘집단적 기억’은 집단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당 집단의 정체성을 파악하려고 한다면 해당집단이 구성하고 있는 ‘집단적 기억’에 대한 검토는 필수적 과정이 되는 것이다. 예컨대 베네딕트 앤더슨의 경우는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⁸⁾』에서 근대와 함께 성립하게 되는 민족(국민)을 ‘상상의 공동체’로 정의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집단적 기억’을 대입해서 읽어 가면 훨씬 이해하기 쉬워진다.

그렇다면 현대일본의 상징천황제는 어떠한 자기인식논리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상징천황제가 어떠한 법적 근거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전의 줄고 속에서 현대일본의 ‘상징천황제’가 제도로 성립되어가는 역사적 경위와 상관없이 헌법 조항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의미의 재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석하여 정리하였었다. 그리고 이 결과가 알브박스가 말하고 있는 기억의 재구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본 혹은 일본인들이 ‘상징천황제’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천황에 대한 일본 혹은 일본인의 기억을 중시해야 하는 이유는 앞서 말한 ‘집단적 기억’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대 일본의 ‘집단적 기억’을 중시하는 이유로서는 일본의 근현대사가 동아시아사의 근현대사 즉, 동아시아의 기억과 중첩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렇기에 ‘상징천황제’로 불리는 현대일본의 군주제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은 ‘천황’과 ‘천황제’가 일본의 신화와 연계된 제도인 만큼 일본 혹은 일본인의 집단적 정체성과 깊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기 때문인 것이다.

7) Maurice Halbwachs(1877년3월11일-1945년3월16일),프랑스의 사회학자로 ‘집단적 기억’의 제창자이다.

8) 앤더슨 윤형숙 옮김(1996.5)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 사회비평사

또한 현대 일본사회 속에서 상징천황제가 변용되는 이유 역시도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천황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럼 일본의 ‘천황제’는 일본 역사 속에서 어떤 경위를 거쳐 성립하게 되는 것일까? 일본의 역사 속에서 ‘천황’이 등장한 것은 대략 7세기를 전후한 시기로 추정되고 있고, 천황에 대한 언급 역시 동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때문에 제도로서의 ‘천황제’와 상관없이 ‘천황제’란 용어의 성립을 7세기로 오인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일본의 역사 속에서 ‘천황제’란 말이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의 ‘일본공산당’의 성립과 함께이다. 즉, 명치유신과 더불어 창출되어진 제도로서의 ‘근대천황제’는 ‘국체(國體)’가 되었고, ‘천황’과 ‘천황가(天皇家)’는 성스러운 용어로 정착되었었는데, 이러한 제도에 대해 일본공산당은 경멸과 저주의 뜻을 담아 ‘천황제’란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위를 지닌 ‘천황제’가 전후에 역사적 용어로서 정착하였다는 점은 특기할 사항일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의할 것은 비록 용어에 대한 역사는 짧지만 역사 속의 ‘천황제’는 아주 오래되었으며, 일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천황제’가 차지하고 있는 역사적 의미와 무게는 매우 크다는 점이다. 특히, 고대 일본의 성립과 관련하여 기술된 기기신화(記紀神話)가 ‘천황’의 계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서술되었다는 점은, 일본·일본인에게 있어서의 ‘천황’과 ‘천황제’에 대한 인식의 단면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신화는 집단의 정체성을 담고 있으며, 천지창조의 성격을 지닌 일본의 기기신화가 ‘천황’의 계보를 설명하고 있는 사실에서 ‘천황’이 일본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현대 일본인에게 있어서 ‘천황’과 ‘천황제’가 고유한 일본 문화로서 인식할 수 있는 근거를 기기신화가 담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일본의 ‘천황’과 ‘천황제’를 일본문화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지니게 된다. 하지만 고유한 문화이기에, 일본 고유의 ‘집단적 기억’을 동시에 매개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독일의 문화학자 얀 아스만은 모든 사회적 기억에 ‘의미’가 부여될 때 그 기억은 ‘문화적 기억’이 된다고 설명한다. 아스만의 설명에 따르면 사회 혹은 집단은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 과거의 기억을 끊임없이 현재화하려고 한다. 그리고

9) 본 논문에서 언급하는 ‘집단적 기억’과 ‘문화적 기억’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은 다음 밝히고 있는 논문과 저서를 참고하여 필자가 스스로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따라서 논문 서술 상 언급하는 ‘집단적’ 혹은 ‘문화적’ 기억에 관해서는 특별히 원문을 인용한 경우가 아니면 주석을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다.

김학이(2005.11) 「얀 아스만의 “문화적 기억”」 『서양사연구』33, pp.227-258

오경환(2007) 「집단기억과 역사」 『亞太쟁점과 연구』가을호, pp.86-87

北条ゆかり(2007) 「記憶の歴史化」 『彦根論叢』第369号, pp.1-21

田中直(2011) 「『過去の克服』と集团的記憶」 『立命館國際研究』24-2, pp.219-240

이를 위해 기념비와 기념일을 정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고안하여 개인의 기억을 망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과 동시에 집단의 기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아스만이 말하는 ‘문화적 기억’의 속성이고, 이 의미에서 현대일본의 ‘상징천황제’는 일본의 문화적 기억을 매개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적 장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19세기 말의 일본이 근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근대천황제’를 정점으로 국민적 통합을 이끌어내고자 했던 역사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통해 ‘근대천황제’가 일본문화 혹은 일본적 정체성의 변용을 의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일본의 역사 속에서 ‘근대천황제’는 결과적으로 ‘창출’된 제도였다는 점 역시 집단의 필요에 따른 역사적 윤색(기억의 재구성)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실제로 사료 속에서 증명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일본의 ‘근대천황제’가 창출되어졌다는 점은, 알브락스가 말하는 ‘집단적 기억’과 그 성립상의 메커니즘에 있어서 유사성을 띤다. 실제로 ‘집단적 기억’이 특정 집단의 의도에 의해 윤색되어 재구성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근대천황제’ 역시 특정한 의도에 의해 윤색되고 재구성되어 창출되는 과정을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맥락은 ‘근대천황제’를 계승하고 있는 현대 일본의 ‘상징천황제’ 역시 윤색과 재구성의 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점에서 현대 일본의 ‘상징천황제’가 전후 새롭게 성립한 일본국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천황과 관련한 조항에 의해 ‘제도적 장치’로서의 기능을 담보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의해야 할 점이다. 즉 일본국헌법은 천황과 관련하여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¹⁰⁾」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현대일본의 ‘상징천황제’를 법적지위와 함께 객관적 근거를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의 성격을 지니게 만들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현재의 일본국헌법은 1946년, 당시의 GHQ에 의해 구상된 것이다. GHQ의 ‘헌법개정’을 통한 정치적 의도의 실현은 결과적으로 전범으로서의 일본 천황을 ‘상징천황’으로 거듭나게 만들었고, 이러한 역사적 단계를 거치게 된 현대일본의 ‘상징천황제’는 그 의미에서 더욱 합법적인 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예컨대 천황제파시즘으로 기억되는 일본의 ‘근대천황제’는 『대일본제국헌법』이 천황 혹은 천황제의 성격을 담보하였고, 현대 일본의 ‘상징천황제’는 『일본국헌법』이 그 성격을 규정함으로써 형식상으로 명백한 입헌군주제의 정체(政體)를 지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일본의 근대이후에 정체(政體)로서 기능하는 ‘천황제’는 철저하게 『헌법』

10) 일본국헌법, 제1장 제1조, 家永三朗(1977)『歴史のなかの憲法 下』東京大学出版会, p.794, 원문은 「天皇は、日本国の象徴であり日本国民統合の象徴であつて(下略)」이다.

이 그 기능을 담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근대천황제’와 ‘상징천황제’의 기능을 비교하고자 한다면, 이를 담보하고 있는 『대일본제국헌법』과 『일본국헌법』이 ‘천황’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일본의 ‘천황’과 관련한 일본『헌법』에 관한 연구는 주권의 소재와 성립의 형식면을 비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즉 『대일본제국헌법』이 흡정헌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주권의 소재를 천황에 두고 있는 것에 비해, 『일본국헌법』은 민정헌법의 형식을 취해 주권을 일본국 국민에게 소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후의 『일본국헌법』은 민주주의적 헌법이라는 설명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통해 두 『헌법』은 성립상의 명백한 차이를 지니게 된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두 『헌법』의 구성과 조항의 내용일 것이다. 필자는 특히 『일본국헌법』이 『대일본제국헌법』의 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왜냐하면 현행 일본의 『일본국헌법』은 『대일본제국헌법』의 체제와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였기 때문에 국민국가의 주권을 명기해야 할 항목에 ‘상징천황’에 대한 규정이 명기되는 아이러니를 낳고 있는 사실을 통해 ‘상징천황제’의 변용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러한 『헌법』상의 형식과 체제는 결과적으로 현대 일본의 ‘상징천황제’가 전전의 ‘근대천황제’를 계승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천황’ 혹은 ‘천황제’를 둘러싼 내재적 성격마저도 계승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역사의 이행과정 속에서 일본의 ‘근대천황제’의 종언이 천황제파시즘과의 단절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전후 일본천황의 인간선언은 전전의 일본제국이 지니고 있던 ‘집단적 기억’과의 단절을 알리는 역사적 사건으로, 그리고 『일본국헌법』의 성립은 또 다른 ‘집단적 기억’의 변용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역사적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점을 바탕으로 3절에서는 ‘일본국 헌법’이 현대일본의 ‘상징천황제’를 어떤 식으로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3. 헌법체제 속의 ‘상징천황제’

일본의 현행 헌법은 천황을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규정하고 있다. 흔히 ‘상징천황제’라는 말로 대신하는 현대 일본의 천황제는 헌법 규정에 근거하여 본다면 전전의 ‘근대천황제’와 본질적인 의미와 역할은 구분되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개항과 함께 역사의 무대로 부상한 일본의 「근대천황제」가 수행해 왔었던 일본 국가와 사회에 대한 역할이 패전과 더불어 새로이 규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이기도 하다. 전후 일본의 천황제가 존속하게 된 이유와 관련해서 후루카와(古川)는 「일본지배층의 생각과 「구태의연」한 국민의 의사를 이용하면

서, 기본적으로는 아메리카점령군의 정책에 의해¹¹⁾ 온존되어졌다고 설명한다. 필자 역시 후 루카와의 의견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고 바로 이 점이 일본의 「상징천황제」가 「근대천 황제」와 단절되지 못한 이유라고도 생각하고 있다. 즉 미국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 단절되었어 야 할 「천황제」는 제도상의 변용은 있었지만, 일본사회 속에서 여전히 <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의 근거를 남겨두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헌법제정과 관련한 GHQ초안은 「황제 는 국가의 상징」으로서 「인민통일의 상징」으로 해야 한다고 명기되어져 있으며, 헌법개정초 안은 이러한 의사를 확인하는 형태로 천황을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국민통합의 상징」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1947년에 공포되는 일본국 헌법은 전후 천황의 지위에 대해 제1장 제1조에서 「일본국, 일본국민의 통합으로서의 상징」이 되었음을 명백하게 밝힌다. 이처럼 GHQ가 의도한 일본국 헌법은 특히 헌법조문에 앞서 별도항목으로 조유(上諭)군주가 신하 에게 이르는 말)가 설정되어있다는 점에서도 현대 일본의 천황제가 지니고 있는 방향성이 드러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료 1> 「일본국헌법」

짐은, ①일본국민의 총의에 근거하여, ②새로운 일본건설의 기초가 정해지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③추밀원 고문의 자문 및 ④제국헌법 제73조에 의한 제국의회 의결을 거친 ⑤제국헌 법의 개정을 재가하여, 이에 이것을 공포하게 한다¹²⁾.

군주가 신하에게 이르는 말의 형식을 빌린 ‘상유(上諭)’속에서 쇼와천황은 스스로 새롭게 공포되는 헌법이 ①일본국민의 총의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새로운 헌법은 새로운 일본을 건설해 갈 ②기초가 될 것이라 말하며 매우 기쁜 일이라 덧붙인다. 이 짧은 문장 속에서 우리는 현대 일본의 천황이 지니게 될 위상에 대해 유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③의 추밀원에 대한 언급과 ④의 제국헌법 제73조와 의결을 통해서라는 말을 통해 현대 일본 의 ‘천황제’가 ‘근대천황제’를 계승하고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발견하게 되며 ⑤를 통해 현행 일본헌법이 ‘제국헌법’을 개정하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만든다. 이 해석은 대일본제 국헌법을 일본국헌법이 개정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법적연속성을 의미하지만, 한편으로는

11) 古川利通(1989)「象徴天皇制と国民主権」『日本歴史と天皇』大月書店, p.363. 인용원문은 「日本の支配層の思惑や、「旧態依然」の国民の意識を利用しながら、基本的には、アメリカ占領軍の政策によって」이다.
12) 「上諭」, 『日本国憲法』, <http://ja.wikipedia.org/wiki/%E6%97%A5%E6%9C%AC%E5%9B%BD%E6%86%B2%E6%B3%95%E4%B8%8A%E8%AB%AD>. 원문은, 「朕は、日本國民の總意に基いて、新日本建設の礎が、定まるに至つたことを、深くよろこび、樞密顧問の諮詢及び帝國憲法第七十三條による帝國議會の議決を経た帝國憲法の改正を裁可し、ここにこれを公布せしめる」이다.

주권의 소재가 천황에서 일본 국민으로 이행되었다는 점에서 생각하면 법적 한계를 넘어선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현대 일본의 ‘상징천황제’가 내재하고 있는 일본적 기억공동체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일본국헌법에 부수되어있는 상유(上諭)가 대일본제국헌법에 명기되었던 상유와 그 성격이 다르고 또 단순히 공포문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의 일부로 볼 수 없다고 말한다면 논지의 여지는 희석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새로이 시작되는 국민국가의 정체(政體)를 명기하고 있는 헌법에 굳이 전문과 함께 천황의 상유(上諭)를 수록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게 필자의 견해이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체(政體)를 담당하게 될 일본정부가 천황의 상유(上諭)를 헌법 전문 앞에 배치하여 천황의 존재를 드러내고자 하고 있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일본의 헌법체제는 구헌법(명치헌법·대일본제국헌법)에서 천황을 국가원수이고 통치권을 총괄하는 존재로, 신헌법(쇼와헌법·일본국헌법)에서는 일본국의 상징이면서 국민통합의 심벌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천황의 존재가치가 주목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신헌법체제에서의 일본천황의 지위는 만세일계의 천황에서 일본국민의 총의에 근거한 지위계승자로 법적 지위근거는 달라져 있지만 무엇보다도 헌법의 제1조에 명기되고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유지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세한 언급은 필자가 즐고 「현대일본의 상징천황제와 기억의 전승¹³⁾」에서 밝히고 있지만, 헌법이 일본천황의 법적 지위를 보장한다는 사실이 일본의 국가체제를 혼동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입헌군주제에 대한 일본인의 인식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일본제국헌법을 구상할 당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프로이센을 모델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입헌군주제를 구상했었고, 헌법에 그 지위가 명기된 천황이란 점에서 일본의 현행 헌법 역시 입헌군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헌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 「상징천황제」에 대해 조사해 온 중의원헌법조사회의 자료에 따르면 일본정부의 인식이 일본을 “입헌군주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점은 현대 일본의 정체(政體)를 어떤 방향으로 구상해 갈 것인가와 관련된 일본정치인들의 인식이란 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당시의 내각 법제국 장관이었던 요시쿠니 이치로(吉國一郎)는 「우리나라(일본·인용자)는 근대적인 의미의 헌법을 지니고 있고, 그 헌법에 따라 정치를 행하는 국가인 이상, 입헌군주제라고 말해도 지장은 없을 것이라 생각¹⁴⁾」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물론 명치헌법하와 같은 통치

13) 손정권(2012) 「현대일본의 상징천황제와 기억의 전승」 『일본근대학연구』 제37집

14) 중의원헌법조사회 사무국(2003.2) 『象徴天皇制に関する基礎的資料』, p.2. 원문은 「わが国は近代的な意味の憲法を持っており、その憲法に従って政治を行う国家でございます以上、立憲君主制と

권의 총람자로서의 천황을 받드는 의미에서의 입헌군주제는 아닌 것은 명백하다⁵⁾」고 덧붙여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본 정부의 각료가 현대 일본의 정체를 입헌군주제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리고 일본 정치인들의 이러한 일본정치체제에 관한 인식에 헌법학자들의 헌법해석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할 항목일 것이다. 즉, 사토 이사오(佐藤功)의 「국민주권하의 군주제¹⁶⁾」와 관련한 언급과 기요미야 시로(清宮四郎)의 군주제에 관련한 언급¹⁷⁾이 이에 해당할 것이고 이러한 천황 혹은 천황제에 대한 이론적 학설은 현대일본의 상징천황제를 군주제로 인식하게 만드는 역할을 담당한다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헌법학자들의 설명은 일본이 입헌군주제임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되며 이론적 근거에 바탕이 된 논리는 그만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헌법학자들의 헌법해석은 현대 일본의 천황이 군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확보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이고, 이러한 이론적 근거는 헌법상 비정치적인 천황이 수행하게 되는 정치적 행위에 관해서 묵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일본의 현행헌법에서 상징적인 존재로 명기하고 있는 천황에 대해 국가원수의 자격을 부여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천황의 원수성(元首性)을 둘러싼 국회에서의 논의는 천황의 법적지위에 관한 일본정부의 스탠스를 드러내는 좋은 사례일 것이다. 제113회 국회에서 행해진 천황의 법적 지위에 관한 질문¹⁸⁾에 내각 법제국 제1부장이었던 오데 타카오(大出峻郎)는 「(전략·인용자)현행헌법상에서 원수란 무엇인가를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원수의 개념에 관해서는 학문상, 법학상은 여러 생각이 있을 듯합니다. 따라서 천황이 원수인가 어떤가라는 문제는, 요컨대 원수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딸린 문제라고 생각¹⁹⁾」 한다고 말했다. 오데(大出)는 덧붙여 「오늘날에는 실질적인 국가통치

言っても差し支えないであろうと思います」이다.

- 15) 중의원헌법조사회 사무국(2003.2)『象徴天皇制に関する基礎的資料』, p.2. 원문은 「もともと、明治憲法下におきますような統治権の総覧者としての天皇をいただくという意味での立憲君主制でないことは、これまた明らかでございます」이다.
- 16) 사토는 자신의 저서『憲法』속에서 일본의 정치체제를 새로운 군주제의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国民主権下の君主制」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주10)과 같은 책, pp.2-3참조.
- 17) 기요미야는 자신의 저서『憲法』속에서 헌법 속의 군주제가 어떻게 변천되어왔는가를 설명한 다음, 일본의 상징천황제가 비록 정치적 색채는 없지만 군주제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군주제는 전주제(autocracy)에 가까운 ‘절대군주제’에서 ‘전제군주제’로, ‘봉건군주제’에서 ‘입헌군주제’로 역사적 변천을 거쳐 ‘의회군주제’로 그 형태가 바뀌었고, 일본의 경우 영국과 같은 ‘의회군주제’와 같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18) 쇼와 63년(1988년) 10월 11일 참의원 내각위원회에서 있었던 논의이다.
- 19) 중의원헌법조사회 사무국(2003.2)『象徴天皇制に関する基礎的資料』, p.4. 원문은 「現行憲法上におきましては元首とは何かを定めた規定はないわけでありまして、元首の概念につきましては、学問上法學上はいろいろな考え方がありまして、したがって、天皇が元首であるかということ、要するに元首の定義いかに帰する問題であ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るわけでありまして」이다.

의 대권을 지니지 않더라도 국가의 소위 헤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원수로 보는 등의, 그러한 견해도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정의에 따르자면, 천황은 나라의 상징이고, 더 나아가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외교관계에 있어서 나라를 대표하는 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현행 헌법 아래에서도 그러한 생각방식을 바탕으로 (천황을-인용자)원수라고 말해도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²⁰⁾ 있다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오테(大出)의 발언을 중시해야 이유는 밑줄 친 「외교관계」를 전후의 천황이 담당해 왔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명료해진다. 즉, GHQ에 의해 권력을 박탈당해 상징적인 존재로 전락했어야 할 전후 일본의 상징천황은 국익과 국가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외교현장에서 ‘평화’의 사절로써 당당히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었기에, ‘상징’으로 남아야 할 ‘천황’에게 원수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고자 하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되풀이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것은 현행 일본의 헌법 제1장 제7조의 조항 때문이기도 하다.

<사료 2> 일본국 헌법, 제1장 제7조²¹⁾

천황은, 내각의 조인과 승인에 의해, 국민을 위해 왼쪽에 명기한 국사에 관한 행위를 행한다.
 일, 헌법개정, 법률, 정령(政令) 및 조약을 공포하는 것.
 이, 국회를 소집하는 것.
 삼, 중의원을 해산하는 것.
 사, 국회의원의 총선거 시행을 공시하는 것.

20) 중의원헌법조사회 사무국(2003.2)『象徴天皇制に関する基礎的資料』, p.4. 원문은 「今日では、実質的な国家統治の大権を持たなくても国家におけるいわゆるヘッドの地位にある者を元首と見るなどのそういう見解もあるわけでありまして、このような定義によりますならば、天皇は國の象徴であり、さらにごく一部ではございますが外交関係において國を代表する面を持っておられるわけでありますから、現行憲法のもとにおきましてもそういうような考え方をもとにして元首であるというふうに言っても差し支えない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るわけであります」이다.

21) 家永三朗(1977)『歴史のなかの憲法 下』東京大学出版会, pp.794-795, 원문은 다음과 같다.
 第七条 天皇は、内閣の助言と承認により、国民のために、左の国事に関する行為を行ふ。
 一 憲法改正、法律、政令及び条約を公布すること。
 二 国会を召集すること。
 三 衆議院を解散すること。
 四 国会議員の総選挙の施行を公示すること。
 五 国務大臣及び法律の定めるその他の官吏の任免並びに全權委任状及び大使及び公使の信任状を認証すること。
 六 大赦、特赦、減刑、刑の執行の免除及び復権を認証すること。
 七 栄典を授与すること。
 八 批准書及び法律の定めるその他の外交文書を認証すること。
 九 外国の大使及び公使を接受すること。
 十 儀式を行ふこと。

- 오, 국무대신 및 법률이 정하는 그 밖의 관리의 임면 및 전권위임장 및 대사 및 공사의 신임장을 인증하는 것.
- 육, 대사면, 특사, 감형, 형의 집행에 관한 면제 및 복권을 인증하는 것.
- 칠, 영전을 수여하는 것.
- 팔, ①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그 밖의 외교문서를 인증하는 것.
- 구, ②외국의 대사 및 공사를 접수하는 것.
- 십, 의식을 행하는 것.

일본국헌법 제1장 제7조는 천황의 국사행위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7조에 명기되어 있는 내용만으로도 천황은 충분히 정치적 권한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더구나 외교행위에 있어서 천황은 ①이 규정하고 있듯이 국가 간의 조약을 비준하고, ②의 규정과 같이 국가 간의 외교행위를 대표하는 외국의 대사 및 공사를 접수하는 일본국의 대표성을 헌법에서 보장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천황은 오데(大出)가 설명하고 있듯이 원수성(元首性)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일본국헌법에 명기된 천황과 관련한 항목은 일본인으로 하여금 상징천황을 국가원수로 생각할 수 있는 합법적 근거가 되고 있으며 아울러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학자들과 법제국 의원들의 이론적 설명은 천황의 상징성이 아니라 원수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4. 제도적 장치로서의 ‘상징천황제’와 기억의 공동체

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억이 ‘집단적 기억’ 혹은 ‘문화적 기억’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교의, 개념, 심벌로의 전환²²⁾」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기억들은 「의미를 띠고 사회의 관념체계의 일요소가 되기²³⁾」때문에 ‘집단적 기억’ 혹은 ‘문화적 기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아스만에 따르면 ‘문화적 기억’이란 각각의 사회와 시대에 존재하는 고유한 텍스트와 형상, 그리고 의례가 나타내는 집합개념이다. 또한 이러한 집합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시대와 그 사회는 자기의 상(이미지)을 확립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문화적 기억’은 집단이 서로 나누어 가지는 집단의 통일성과 독자성의 기반이 되는 주로 과거에 관한 지식을 조달해 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억과 역사는 어떤 점에서 다른 것일까? 흔히「과거를 인식하려고 하는 모든

22) アライダ・アスマン(2007)『想起の空間』水声社, p.165. 원문은「教義、概念、シンボルに轉換される」이다.
 23) 주21)과 같은 책, p.165. 원문은「それらは意味を帯び、社会の観念体系の一要素となる」이다.

행위, 그리고 이 행위의 결과로 얻어지는 과거에 대한 인식'이 '기억'에 해당한다면, 「'학술적'인 방법으로 표현된 기억」은 '역사'에 해당 한다²⁴⁾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점에서 알브박스나 아스만과 같은 기억학자들이 말하는 '집단적 기억'과 '문화적 기억'은 현대 일본의 상징천황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단초를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대 일본의 '상징천황제'는 『헌법』을 매개로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국민국가를 구성하는 원리가 되어야 할 일본의 『헌법』이 '상징천황제'를 지탱하는 논리로 해석되는 다음과 같은 장면은 주의해야 할 것이다.

<사료 3> 국회에 있어서의 논의

(제72회 국회, 소화49년(1974년) 2월 21일 중의원, 내각위원회)

요시다호세이(吉田法晴)군 …천황은 인간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신이 아니라 인간이 되셨다고 생각합니다. ①헌법에 드러나 있는 것 역시 국민주권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징인 천황의 지위는 주권자인 국민의 총의에 근거한다고…(중략—인용자)…「인종, 종교,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가문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는다」라는 인간평등의 원칙이 적혀있습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②기본적으로는 역시 인간이 되신 천황에게도 적용되는 정신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만(하략—인용자)
정부위원(우리우준료 <瓜生順良> 궁내청차장) …(전략—인용자)…14조의 평등 규정입니다만, ③ 이것도 제1조 혹은 제2조, 그러한 부분에 특별규정이 헌법에 설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는 아닌 것입니다만, 그러한 정신을 근거로 한 특별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²⁵⁾.

인용한 사료문 ①부분은 상징천황에 대한 법적 지위에 대한 헌법해석의 기본틀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헌법의 규정이 일반적인 일본국민(인간)에 대한 적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②와 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당시의 일본사회당 소속 요시다(吉田)의원은 대정부 질문을 행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위원으로 나선 우리우(瓜生)궁내청차장은 어디까지나 천황의 지위는 “특별”규정에 근거한다고 답변한다. 그가 말하는 “특별”규정이란 특히 제2조

24) 北条ゆかり(2007)「記憶の歴史化」『彦根論叢』第369号, pp.1-2

25) 중의원헌법조사회 사무국, 『象徴天皇制に関する基礎的資料』, 헤이세이15년(2003)2월, pp.8-9. 원문은 「○吉田法晴君(社)…天皇は、人間宣言をされたんですから、神様でなくて人間になられたと思います。憲法のたてまえも、国民主権の原則に立って、象徴である天皇の地位は、主権者である国民の総意に基づくと書かれております。…(中略—引用者)…「人種、信条、性別、社会的身分又は門地により、政治的、経済的又は社会的関係において、差別されない。」という人間平等の原則がうたっております。これは原則的には、基本的には、やはり人間になられた天皇にも適用される精神ではなからうかと思いますが(下略—引用者)○政府委員(瓜生順良・宮内庁次長)…(前略—引用者)14条の平等の規定ですが、これも第1条とか第2条、そういうところに特別規定が憲法に設けられておりますので、そのとおりではないのでありますが、そういう精神を踏まえての特別規定であると思います。이다.

의 「황위는 세습하는 것으로 국회가 의결한 황실전범이 규정²⁶⁾」한 원칙을 따른다는 조항일 것이다. 이러한 생각방식은 현실 속에서 천황을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게 만드는 근거가 되는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일본만의 ‘집단적’ 혹은 ‘문화적 기억’을 구성하는 논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실제로 천황을 둘러싼 특별규정에 관한 논의는 이후의 국회에서도 끊임없이 논쟁되어왔고, 이러한 논쟁은 현대일본의 ‘집단적 기억’의 재구성과 천황의 관련성을 유추할 수 있게 만드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제96회 국회에서 황족에 대한 헌법규정의 적용을 둘러싼 논의내용은 이 점에서 의미 깊게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료 4> 황족에 대한 헌법 제규정의 적용

(제96회 국회, 소회57(1982)년5월13일 중의원, 결산위원회)

○니이무라카츠오(사) ...①황족 분들은 넓은 의미에서는 국민 속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점은 어떻습니까?(하락—인용자)

○정부위원(아마모토사토루) (전락—인용자)단, ②헌법이 상징천황제라는 제도를 취하고 있고, 이 상징천황제라는 것이 세습제도라는 것은 동시에 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중략—인용자)황위계승권을 지니고 있는 대단히 가까운 범위의 황족에 관한 일정한 신분적인 의미에서의 제약이란 것이 발생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헌법상의 문제일 것으로 생각합니다(하락—인용자)

○니이무라카츠오 그러면 황실전범은 논리적으로는 헌법보다도 우선하는 것으로 됩니다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러한 법규를 초월한 하나의 해석론으로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정부위원(아마모토사토루) 황실전범이 헌법을 초월한 것이 현재도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법률인 것입니다.

③헌법 그 자체가 제2조에서 세습제의 천황제라는 것을 취하고 있는 이상(중략—인용자)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는 정도의 제약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느(하락—인용자)²⁷⁾

26) 家永三朗(1977)『歴史のなかの憲法 下』, 東京大学出版会, p.794, 원문은 「皇位は、世襲のものであって、国会の議決した皇室典範の定める。」이다

27) 중의원헌법조사회 사무국(2003.2)『象徴天皇制に関する基礎的資料』, pp.9-10. 원문은 ○新村勝雄君…皇族は広い意味では国民の中に含まれると思いますけれども、その点はいかがですか。(下略—引用者) ○政府委員(山本悟君)(前略—引用者)ただ、憲法が象徴天皇制という制度をとっており、この象徴天皇制というものが世襲制度であるということは同時に憲法が規定をいたしているところがございます(中略—引用者)皇位継承権を持つ非常に近い範囲の皇族というものにつきましての一定の、身分的な意味での制約というものが生ずることもこれまたやむを得ない憲法上の問題であろうと思います(下略—引用者)。○新村勝雄君 そうしますと、皇室典範は憲法よりも優先するというところに理屈の上ではなってしまうわけですが、そういうことになるのですか。それとも、そういった法規を超えた一つの解釈論としてそういうことになるのか。○政府委員(山本悟君) 典範が憲法を超えたものでは現在もないことはもう明らかであると思います。一つの法律であるわけでありまして。憲法そのものが第2条で世襲制の天皇制というものをとっている限りに(中略—引用者)それを維持する上に必要だと考えられている程度の制約はやむを得ないという(下略—引用者)

황족에 대한 헌법 규정의 적용과 관련한 일본사회당의 니이무라(新村) 의원의 질문은 ‘천황을 포함한 ‘황족’은 헌법규정에 의거한 일본국민이란 사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렇지만 정부위원으로 나선 야마모토는 도리어 헌법이 ‘상징천황제’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특별 취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답변하고 있다. 즉 니이무라가 ①을 통해 ‘황족’은 국민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천황에 대한 규정 역시 일본 ‘국민’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비해, 니이무라(新村)는 ②와 ③을 통해 헌법에 의해 규정된 ‘상징천황제’가 ‘세습’된다는 것이 ‘제도적’으로 ‘입헌군주제’의 특수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답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역사적 아이러니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으로 GHQ가 전쟁책임을 묻는 형식으로 일본의 천황제(정확하게는 근대천황제)를 근절하기 위해 개정된 『일본국헌법』이 결과적으로 ‘천황제’를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게 만들어 준 법적 근거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만드는 대목인 것이다. 또한 ‘제도적 장치’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이점에서 ‘상징천황제’는 집단의 기억을 매개할 기능을 지니게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일본의 ‘천황’이 신화를 바탕으로 일본의 역사 속에서 존속되어왔다는 사실은 ‘천황제’를 일본의 역사이자 문화로 인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문화는 집단의 동질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제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전후 일본의 상징천황으로 거듭난 쇼와천황(昭和天皇)이 일본사회 속에서 공공연하게 공적행위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천황을 ‘문화’적 존재로 인식하는 일본사회의 특수성에 기인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전후 상징천황으로서의 쇼와천황의 공적행위에 관한 국회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사료 5> 천황의 공적행위(제75회 국회, 소화50(1975)년 3월 14일 중의원, 내각위원회)²⁸⁾

○정부위원(츠노다레이지로·내각법제국제1부장) (전략—인용자)①헌법상, 천황이 국가기관으로서 행위를 하시는 그 경우로서는, 헌법이 정하는 소위 국사행위에 한정한다고 하는 것은, 헌법의 4조 2항, 6조 및 제7조에 명기되어져 있는 것이어서(중략—인용자)②헌법이란 것은(중략—인용자)

28) 중의원헌법조사회 사무국(2003.2)『象徴天皇制に関する基礎的資料』, p.14-15. 원문은 ○政府委員(角田礼次郎·内閣法制局第一部長)(前略—引用者)憲法上、天皇が国家機関として行為をされるその場合としては、憲法の定めるいわゆる国事行為に限るといふことは、憲法の4条2項、6条及び第7条に明記され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して(中略—引用者)憲法というものは(中略—引用者)国家構造というものを決めている基本法でございますから、わが国におきましては立法、行政、司法の三権についてそれぞれ決めていると同時に、天皇という特別の地位を持っておられる方も広い意味の国家構造の一部として国事行為を行われる、これが国家機関としての天皇の地位であろうと思ひます(中略—引用者)そこで、天皇の御行為としては憲法上の国事行為、それから象徴としての地位を反映しての公的な行為、それから全く純然たる私的な行為、この三種類が挙げられる、私どもこれを三分説というふうに申し上げているわけでありまして…이다.

국가구조라는 것을 결정하고 있는 기본법이기에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에 관해 각각 정해져 있는 것과 동시에, 천황이라고 하는 특별한 지위를 지니고 계신 분도 넓은 의미의 국가구조의 일부로서 국사행위를 행하신다, 이것이 국가기관으로서의 천황의 지위라고 생각합니다(중략—인용자)그래서 ③천황의 행위로서는 헌법상의 국사행위, 그리고 상징으로서의 지위를 반영한 공적인 행위, 그리고 온전히 사적인 행위, 이 3종류를 예로 들 수 있다, 우리들은 이것을 삼분설이라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천황의 공적행위에 관한 츠노다의 답변은 이론적으로는 헌법학자 사토 이사오(佐藤功)의 학설²⁹⁾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우선 츠노다의 답변을 보면 ①에서 천황을 국가의 공적기관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천황을 국가기관으로 생각하는 것은 소위 국가법인설에 근거한 논리로 일찍이 미노베 타츠키치(美濃部達吉)의 천황기관설(天皇機關説)³⁰⁾에서도 이러한 사상의 일단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사토 등의 전후의 학자가 말하는 국가기관과 미노베 등의 전전의 헌법학자가 말하는 천황기관설에는 역사적 사회적 배경이 전혀 다르지만, 천황을 ‘국가기관’으로 생각한다는 점에서 천황에 대한 사상의 일단면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가 된다. 또한 ‘천황’을 국가 원수로 생각하는 법적 근거를 헌법조항이 담보하면서 논리의 객관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 역시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 때문에 츠노다는 천황의 공적행위를 헌법이 담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②를 통해 천황은 국가구조의 일부로서 국사(国事)행위를 하는 것이라 설명한다. 그렇지만 인간으로서 천황이 행하는 행위에는 사적인 행위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③과 같이 천황의 행위를 ‘삼분설’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도 덧붙이고 있다. 그런데 천황의 공적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천황’과 ‘천황제’가 제도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란 점에 주의해야 한다. 즉, 현대일본의 천황이『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징’의 역할을 넘어 제도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상징천황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징’이란 용어에 ‘무형이면서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형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은, 일본의 천황이 지니고 있는 ‘상징성’만으로 이미 일본이란 공동체를 대개할 수 있는 역할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제118회 국회³¹⁾에서 내각법제국 장관이었던 구도 아츠오(工藤敦夫)가 천황의 공적행위의 근거에 대해 「천황의 공적행위란 것은, 헌법에 정해진 국사(国事)행위 이외의 행위」로 「천황이 상징으로서의

29) 佐藤功(1983)『憲法(上)新版』有斐閣

30) 천황기관설은 대일본제국헌법에 의해 확립된 헌법학설이다. 통치권은 법인인 국가에 있고 천황은 최고기관으로서 내각을 비롯한 모든 기관의 보필 속에서 통치권을 행사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독일 공법에 있는 국가법인설에 기초한 논리로 헌법학자 美濃部達吉 등이 주장하였던 학설이다.

31) 1990년,5월17일, 중의원·예산위원회에서 행해졌던 대정부질의응답을 나타냄.

지위에 근거하여 공적인 입장에서 행하시는 일³²⁾이라는 모순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대 일본이 ‘천황’을 ‘상징’이자 ‘제도적 장치’로 인식하고 있는 증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현대 일본의 ‘상징천황’은 ‘상징성’과 ‘제도적 장치’의 이중적 성격을 지니면서 일본이라는 공동체를 매개하고 있는 존재로 기능하고 있다. 일본사회는 ‘천황’과 ‘천황제’가 지나고 있는 이러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적제도와 문화적 의례를 적절하게 활용한다. 이것이 바로 알브박스가 말하는 ‘집단적 기억’을 전승하는 일이고 동시에 아스만이 말하는 ‘문화적 기억’을 전승하는 일이기도 한 것이다. 그리고 이 점에서 현대일본의 ‘상징천황제’는 일본이란 공동체를 매개하는 ‘기억의 공동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5. 나가기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 수도 있는 유대민족이 민족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근거에는 ‘성경’을 매개로 한 그들만의 ‘집단적 기억’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역사 속에서 ‘집단적 기억’이 중요시되는 것은 ‘공동체’를 매개하여 존속시켜주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는 끊임없이 과거의 기억을 현재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망각을 극복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개발해내고자 한다. 즉, 우리가 흔히 기억하는 기념일, 기념비, 의례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유지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기억의 망각화를 저지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또한 문화적 의미를 지니게 되고, 이러한 의미가 전승되어지는 것을 얀 아스만은 ‘문화적 기억’이라 부른다. 흔히 개인이나 집단에 내재한 기억은 이야기와 그림, 문자에 의해 외부로 드러나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해 기억은 전환되기도 혹은 치환되는 과정을 거쳐 더욱 견고한 것으로 바뀐다고 한다. 이는 알브박스가 교회의 성립과정을 통해 증명하였듯이 ‘집단적 기억’은 텍스트를 바탕으로 상징화와 의례의 과정을 통해 신념화되고 정착해 가기 때문일 것이다.

본문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대 일본의 ‘상징천황제’는 텍스트(헌법)를 통해 규정되어졌고 상징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의례와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알브박스를 비롯한 많은 기억학자들이 증명해 온 ‘집단적 기억’ 혹은 ‘문화적 기억’이 정착되는 과정과 유사하다. 또, 이들이 강조했듯이 집단적 혹은 문화적 기억은 해당 공동체의

32) 중의원헌법조사회 사무국(2003.2)『象徴天皇制に関する基礎的資料』, p.17. 원문은 「天皇の公的行為というのは、憲法に定める国事行為以外の行為で、天皇が象徴としての地位に基づいて公的な立場で行われるものをいう」이다.

‘신념’이자 그 집단의 ‘정체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점에서 현대 일본의 ‘상징천황제’는 일본사회의 혹은 일본인들이 지니고 있는 ‘신념’이자 ‘정체성’의 또 다른 이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사실 속에서 무엇보다 주의하고 싶은 것은 ‘상징천황제’가 ‘근대천황제’를 계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아시아의 역사는 이미 일본의 ‘근대천황제’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 왔는지를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천황제’가 현대일본의 ‘기억의 공동체’를 매개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아울러 최근 일본사회가 드러내고 있는 극단적 우익화의 경향은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증명해 주는 사실이란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 곧 전후 70년을 맞이하게 된다. 70년이란 ‘집단적 기억’의 전환을 의미하는 시한적 개념이다. 일본이 새로운 ‘집단적 기억’을 형성하기 위해 일련의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는 것은, 이러한 시한적 의미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며 그 역할을 ‘상징천황제’가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 권귀숙(2006)『기억의 정치 - 대량학살의 사회적 기억과 역사적 진실』문화과지성사
김선민의 공저(2009)『황국사관의 통시대적 연구』동북아역사재단
유용태 외 공저(2011)『함께 읽는 동아시아 근현대사』1, 2, 창비사
야스마루 요시오 저, 박진우 옮김(2006)『현대일본사상론』논형
앤더슨 윤희숙 옮김(1996)『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사회비평사
윤상인의 공저(2007)『일본의 발명과 근대』이산
박진우편저(2006)『21세기 천황제와 일본 - 일본 지식인과의 대담』논형
백영서(2009)『동아시아의 근대이행의 세 갈래』창비사
家永三郎(1977)『歴史のなかの憲法』東京大学出版部
菅孝行(1987)『現代天皇制の統合原理』明石書店
菅孝行(1987)『天皇制-解体の論理』明石書店
鈴木正幸(2004)『国民国家と天皇制』校倉書房
福富節男ほか共編(1989)『天皇制なんかいらない』新地平社
歴史科学協議会 編(1985)『史料日本近現代史』大月書店
歴史教育者協議会 編(1985)『日本歴史と天皇』大月書店

논문투고일 : 2013년 09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3년 09월 20일
1차 수정일 : 2013년 10월 09일
2차 수정일 : 2013년 10월 16일
게재확정일 : 2013년 10월 21일

 <要旨>

‘상징천황제’의 구성원리와 일본적 기억공동체의 특징

본 논문은 현대일본의 ‘상징천황제’와 ‘집단적 기억’과의 연관성을 검토하여 일본사회의 ‘기억의 공동체’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상징천황제’가 헌법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천황제가 단순히 ‘상징성’만이 아니라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일본의 ‘상징천황제’는 ‘집단적’ 혹은 ‘문화적’기억을 매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상징천황제’가 현대 일본에 있어서 ‘기억공동체’의 구성 원리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결과적으로 우경화의 원인이 되고, 새로운 집단적 기억을 구성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제언하였다.

The constituting principle of the emperor-as-a-symbol system, and the feature of a Japanese memory community

This paper tended to analyze the relevance of the emperor-as-a-symbol system of present age Japan, and collective memory, and tended to examine the feature of the community of the memory in Japanese society. Since the emperor-as-a-symbol system's functioning considering the constitution as the legal basis especially and the Tenno system were functioning not only as mere symbolism but as institutional equipment, it became clear that collective memory could be carried. Therefore, the emperor-as-a-symbol system works as a constituting principle of the memory community of present age Japan, and, moreover, can cause a conservative swing. Thus, probably, the emperor-as-a-symbol system of present age Japan should be cautious of constituting new collective memory.